2017-18 IBS 안내서 주요 개정사항

2017년 2월, 혁신사업실 신설에 따라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(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, DIP) 내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(Inclusive Business Solution, IBS)에 대한 정의, 발굴 및 심사, 운영, 평가 등에 대한 기준 및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. 이에, 2016년 6월 발간한 '17년도 기업협력사업 안내서 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※ '17. 9월 1일 기준, 진행 중인 사업 및 신규 사업부터 적용)

구분	2017년도 안내서 (2016. 6월 발간)	2017-2018년도 안내서 (2017. 8월 발간)	페이지 참조	계속사업 적용여부
지원 자격	시장형 공기업 참여 가능	시장형 공기업 단독 참여 불가 - 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과의 컨소시엄 체결로는 참여 가능	P.18	×
신규 제안 사업 수	해당 없음	○재원분담 단독 참여 시 최대 1개 ○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최대 2개	P.18	×
사업 기간	1-5년	2-5년	P.18	×
재원 분담 비율	대·중견기업 : KOICA = 50 : 50	○대기업 : KOICA = 70 : 30 ○중견기업 : KOICA = 50 : 50 ○중소/사회적기업은 기존과 동일	P.19	×
비현금성 재원	○인건비 분담액 산정 기준 - KOICA 인건비 지급 기준과 파트너기관 자체 인건비 지급 기준 중 최저 인건비 적용 ○상품 및 제품 분담액 산정 기준 - 예산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근거자료로 평가	○인건비 분담액 계산법 - 파트너기관 자체 인건비 지급 기준단가 적용 ○상품 및 제품 분담액 산정 기준 - 제안서(예산서 포함)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근거자료로 평가	P.21	×
사업 방식	수시발굴 방식으로 진행	공동기획형과 공모형으로 병행 진행 - (공동기획형) 분기별 1회 - (공모형) 연 1회	P.23	×
지속 사업 횟수 제한	해당 없음	지속사업의 경우, 단년도/다년도 사업 구분 없이, 기존 사업 실적 포함 최대 3회까지 지원	P.24	○
사업 심사	<수시발굴> ○1차 서면심사 - 적격성(적격·보완·부적격)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○2차 면접심사(100점 만점 기준) - 80점 이상 획득 시 적격 - 70-80점 사이 조건부 적격 - 70점 미만 획득 시 부적격	<공동기획형> ○1차 서면심사 - 산술평균점수 기준으로 심사 (80점 이상 적격) ○2차 면접심사(100점 만점 기준) - 80점 이상 획득 시 적격 - 75-80점 사이 조건부 적격 - 75점 미만 획득 시 부적격 <공모형> ○1차 서면심사 - 산술평균점수 기준으로 심사	P.28 P.29 P.32	×

		(70점 이상 적격) ㅇ2차 면접심사(100점 만점 기준) - 산술평균점수 70점 이상 사업 중 가용예산 범위 내 고득점순 선정 ㅇ파트너기관의 추가 재원분담비율 및 청년 일자리 창출(신규 고용) 기여 정도를 검토, 가산점 부여		
사업 보고	해당 없음	사업착수-중간점검-사업종료 시점별로 사업현황 및 성과 보고 - (착수) Ignition Day(I-Day) - (중간) Break-point Day(B-Day) - (종료) Solution Day(S-Day)	P.37 P.41 P.42	○
보고서 제출 기한	ㅇ반기별사업추진 현황서 - 매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 ㅇ사업약정이행 결과서 - 사업종료 후 45일 이내	ㅇ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 - 매 반기 경과 후 15일 이내 - 단, 정산관련 증빙서류는 30일 이내 회계법인 도착 ㅇ사업약정이행결과서 - 사업종료 후 45일 이내	P.38	○[1]
예산 변경	ㅇ사전통보 예산전용 허용범위 - 누적비율 10%까지	ㅇ사전통보 예산전용 허용범위 - 동일 목 내 세목 간 전용의 경우, KOICA 분담금-파트너 분담금 구별 없이 연도별 사업예산의 25% 범위(누적) 이내 - 직접사업비-간접사업비 간 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ㅇ기타 승인 필요사항 안내서 참고	P.46	○
예산 편성 불가 항목	ㅇ선물구입비, 관광비, 기념품구입비, 유흥비 ㅇ범용성 기자재 구입비 ㅇ사업부지, 부동산 구입비 ㅇ차량구입비 ㅇ사업수행팀원(개인) 소유의 시설 및 기자재 사용.임차료 ㅇ상대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관이 내는 세금 ㅇ타 정부기관에 의해 중복 지원되는 항목	<기존 항목에서 하기 내용 추가> ㅇ국내사무소 임차료 및 운영비 ㅇKOICA ODA 사업수행기관 인턴, NGO 봉사단 또는 타 정부 지원금/보조금 지원인력의 인건비 ㅇ사업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 단기성 방문경비 및 이벤트성 행사경비	P.57	○
예산 편성 기준	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편성 - 직접사업비(인프라/워크숍/인건비 등) - 간접비(운영경비/지원인력인건비 등) - 기타(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)	ㅇ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편성 - 직접사업비(output/activity 등 사업활동과 연계하여 구성) - 간접사업비(현장사무소 운영, 본부 사업지원, 성과관리, 홍보로 구성) ㅇ기타 사업비 단가 산정 기준은 안내서 참고 ㅇ건축, 인프라, 기자재 비용의 합계는 총 사업비의 50% 초과 불가	P.59	×

		ㅇ간접사업비 내 인건비의 합은 총 사업비의 30% 초과 편성 불가		
사업비 지출 증빙	ㅇ간이영수증 - 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, 법적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거래처에서 분할하여 수령한 간이영수증의 경우, 합산금액이 10만원 초과 불가 ㅇ백지영수증 - 해당 거래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, 법적 증빙으로 인정하며,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거래처에서 분할하여 수령한 백지영수증의 경우, 합산금액이 3만원 초과 불가 (해당 금액 전액 불인정)	ㅇ간이영수증 인정 한도 증액 - 10만원 한도 기준 삭제 ㅇ백지영수증 인정 기준 완화 - 3만원 한도는 동일 적용되나, 매도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, 10만원까지 인정	P.82	○
사업비 잔액 반납	ㅇ반납대상금액 산정 기준 - 사업비 최종정산 결과, 사업비 대비 미집행된 사업비가 반납 예외 금액(사업 종료일 기준 원화 및 미화 잔액 합산 금액 10,000원 이하)을 초과 했을 경우, 매칭 비율에 따라 KOICA 분담금 잔액 반납	ㅇ반납대상금액 산정 기준 - 사업비 최종정산 결과 반납대상금액(KOICA + 파트너 분담금 반납대상금액)이 발생할 경우, 아래와 같이 KOICA에 반납 - (KOICA 분담금 반납액) KOICA 반납대상금액 전액 반납 - (파트너 분담금 반납액) 파트너 분담금 반납대상금액이 해당연도 파트너분담금의 5%와 5백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반납산식에 따른 해당 금액을 KOICA에 반납	P.101	○[2]
지출 대장	ㅇ 사업비총괄명세.sheet - 최초예산/최종예산/**<u>집행액</u>**/집행율 4개 열로 구성됨. - '집행액'은 지출대장에 지출내역 작성 시 합계로 계상되는 부분으로서, 세목별 예산 초과 집행 여부를 떠나 파트너기관이 집행하였다고 보고하는 금액으로 기입됨. - '집행율' 열은 '최종예산' 대비 '집행액'으로 계상됨.	ㅇ 사업비총괄명세.sheet - 최초예산/최종예산/집행보고액/예산대비 집행액/집행율 5개 열로 구성됨. - '집행보고액'은 기존양식의 '집행액'과 동일하게 계상되며, 명칭만 변경됨. - '예산대비 집행액' 열이 추가되었으며, 세목별 최종예산을 한도로 그보다 초과집행하더라도 예산 한도 금액까지만 인정됨. - '집행율' 열은 '최종예산' 대비 '예산대비 집행액'으로 계상됨.	붙임 파일	○

[1] '17. 12월 31일 이전 반기보고서 제출의 경우, 기존대로 보고시점 30일 적용, '18. 1월 1일 이후 제출의 경우는 15일 기준 적용(개정에 따른 4개월 유예기간 설정)

[2] 사업비 잔액 반납의 경우, '17. 9월 1일 기준으로 회계정산검토 대상 사업부터 모두 적용

※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, '17. 9월 1일자로 적용